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04 발의연월일: 2025. 4. 24.

발 의 자:문진석・이건태・강준현

이재관 • 이연희 • 복기왕

윤종군 • 조인철 • 이춘석

서영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지구계획에는 교통·공공·문화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 음.

그런데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걷기공원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있어서 도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지구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여 공 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 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#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4호 중 "공공·문화체육시설"을 "문화체육·공공시설(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공원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지구계획 승인 등) ① 공	제17조(지구계획 승인 등) ①
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	
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	
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	
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된	
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	
같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	
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	
지정 • 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	
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	
아니하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교통 · <u>공공 · 문화체육시설</u>	4 <u>문화체육·공공시설(맨</u>
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	<u>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</u>
계획	<u>한 공원을 포함한다)</u>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